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5.12.31.)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AF528]

| 투자위험등급 : 2등급 [높은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베어링 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중국 및 홍콩
지역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빌췌·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 | | | | | | | | | | |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중국 및 홍콩 지역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신탁 자산의 50% 이상을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에 적극적인 기업이나 ESG를 개선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 | | | | | | | | |
| | 투자신탁 / 증권(주식-재간접형) / 개방형(중도환매가능) / 추가형 / 모자형 / 종류형 | | | | | | | | | | |
| 투자비용 | 클래스 종류 |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 | | |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 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 | | |
| | 판매수수료 |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보수 ·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 납입금액의 1.00%이내 | 0.874% | 0.700% | 0.830% | 1.624% | 264 | 434 | 609 | 977 | 2,008 |
| |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 보수차감형(C1) | 없음 | 1.474% | 1.300% | 1.190% | 2.224% | 226 | 428 | 625 | 1,015 | 2,104 |
| |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 납입금액의 0.50%이내 | 0.524% | 0.350% | 0.560% | 1.274% | 179 | 314 | 453 | 747 | 1,581 |
| | 수수료미정구- 온라인형(Ce) | 없음 | 0.674% | 0.500% | 0.740% | 1.424% | 145 | 296 | 452 | 780 | 1,707 |
| (주 1)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 보수·비용 예시'는 투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을 [연간 0.75%](피투자집합투자기구 운용보수는 연 0.75%이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 비용은 제외)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주 2)종류 A 형과 종류 C1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이 지나게 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지나게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주 3)Class C1 의 경우 Class C1, Class C2, Class C3, Class C4 로 전환되는 경우 예상되는 보수 및 비율을 산출 한 것입니다. | | | | | | | | | | | |
| (주 4)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주 5)'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2025년 11월 말 기준)을 의미합니다. | | | | | | | | | | | |

|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단위: %) | | | | | | | | | |
|--|---|---|----------------------------|----------------------------|----------------------------|----------------------------|--------|------------|-------------|-----------|
|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이후 | | | |
| | | | 2025/01/01 ~ 2025/12/31 | 2024/01/01 ~ 2025/12/31 | 2023/01/01 ~ 2025/12/31 | 2021/01/01 ~ 2025/12/31 | | | | |
| | 수수료선택- 오프라인형(A) | 2013-03-19 | 22.76 | 23.28 | 9.28 | -1.08 | 5.42 | | | |
| | 비교지수 | 2013-03-19 | 25.14 | 28.84 | 15.14 | 3.18 | 5.60 | | | |
| | 수익률 변동성 | 2013-03-19 | 19.03 | 22.22 | 21.07 | 22.61 | 19.88 | | | |
| (주 1) 비교지수: [MSCI China Index 10/40 Index (USD)(KRW)] X 90% + Call 10% | | | | | | | | | | |
| (주 2) 2018.06.01 전 비교지수: [MSCI China Index (USD)(KRW)] X 90% + Call 10% | | | | | | | | | | |
|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 | | | | | | | | | |
| (주 4) 수수료선택-오프라인형(A)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주 5) 연평균 수익률은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운용전문 인력 | (2025.12.31 기준) | | | | | | | | | |
|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형) | | 운용 경력년수 | | |
| | | | | 집합투자 기구 수 | 운용 규모 | 운용역 | 운용사 | 총합 | ESG 운용기간 | |
| | 안동길 | 1970 | 책임 운용역 | 23개 | 4,451억원 (팀운용) | 5.87% | 7.36% | 5.87% | 20년 2개월 | 4년 7개월 |
| | 이준동 | 1991 | 부책임 운용역 | 7개 | 153억원 (팀운용) | 20.76% | 17.16% | | | 2년 4개월 |
|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 | | | | | | | | |
|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 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 | | | | | | | | |
|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 | | | | | | | | |
| (주 5) 각 운용역 간의 성과 차이 및 운용역 성과와 회사 성과 차이는 전략 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투자자 유의사항 | <p>1.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3.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4.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5.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 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p> <p>6.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참조</p> | | | | | | | | | |
|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 | | |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r> <td rowspan="5">시장위험</td><td>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 <td>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 <td>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 <td>이 투자신탁은 미달러화로 표시되어 거래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미달러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환헤지를 하는 경우라도 시장 상황에 따른 환헤지 실행비율 등에 따라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미달러화 이외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미달러화 이외 표시통화의 미달러 대비 가치변동으로인한 환율변동위험이 존재합니다.</td></tr> <tr> <td></td></tr> </table> | | 시장위험 |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미달러화로 표시되어 거래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미달러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환헤지를 하는 경우라도 시장 상황에 따른 환헤지 실행비율 등에 따라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미달러화 이외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미달러화 이외 표시통화의 미달러 대비 가치변동으로인한 환율변동위험이 존재합니다. | |
| 시장위험 |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이 투자신탁은 미달러화로 표시되어 거래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미달러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환헤지를 하는 경우라도 시장 상황에 따른 환헤지 실행비율 등에 따라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미달러화 이외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미달러화 이외 표시통화의 미달러 대비 가치변동으로인한 환율변동위험이 존재합니다. | | | | | | |
| | | | | | | | |
| 매입방법 | · <u>오후 5시</u> 이전 : 3 영업일 기준가 매입 | | | | | | |
| | · <u>오후 5시</u> 이후 : 4 영업일 기준가 매입 | | | | | | |
| 환매 수수료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환매방법 | | | | | | | |
| 기준가 | · 산정방법 : (직전일의 자산총액 -부채총액)/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 | | | | | | |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 투자협회 (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 | | | | | |
| 과세 | 분배되는 이익 및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거주자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원천징수되며(개인 및 일반 법인 15.4%),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거주자 개인의 금융종합소득(배당, 이자 소득포함)이 연간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에 대해서 최고 41.8%(과세표준 3 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공제됨). 참고로, 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은 전체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현재 최고 24.2%(과세표준 200 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의 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됩니다. | | | | | | |
| ※ 과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전환절차 및 방법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함)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 | | | | |
| | ①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③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 | | | | |
| ※ 기타 전환 관련 세부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집합투자업자 | 베어링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8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barings.com/ko) | | | | | | |
| 모집기간 효력발생일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 | | | | | |
| | 2026.01.13 | | | | | |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barings.com/ko) 및 한국금융 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종류(Class)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 | | | | | | | |
| | 판매 수수료 | <table border="1"> <tr> <td>수수료 선후(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이 지나게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 <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후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후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이 지나게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후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 | 수수료 선후(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이 지나게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후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후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이 지나게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후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수수료 선후(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이 지나게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후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후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이 지나게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후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판매 경로 | <table border="1"> <tr> <td>온라인 (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 <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 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 <td>온라인 슈퍼(S)</td><td>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able> | 온라인 (e) | 판매회사의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오프라인 | 오프라인 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온라인 슈퍼(S)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 |
| 온라인 (e) | 판매회사의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 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 | | | | | | | | |
| 온라인 슈퍼(S)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기타 | <table border="1"> <tr> <td>보수체감 (CDSC)</td><td>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에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td></tr> <tr> <td>기관(F)</td><td>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투자가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 <td>무권유 저비용 (G)</td><td>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 <td>개인연금 (P)</td><td>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 <td>퇴직연금 (P2)</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 <td>웹(W)</td><td>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 | 보수체감 (CDSC) |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에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기관(F) | 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투자가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무권유 저비용 (G)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개인연금 (P)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퇴직연금 (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웹(W) |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보수체감 (CDSC) |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에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 | | | | | | | | | | |
| 기관(F) | 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투자가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무권유 저비용 (G)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개인연금 (P)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퇴직연금 (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웹(W) |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barings.com/ko)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barings.com/ko)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barings.com/ko)